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6
----------	-----

2025. 8. 29.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점진적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대상포진 접종 지원 대상자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함으로써 고령층 구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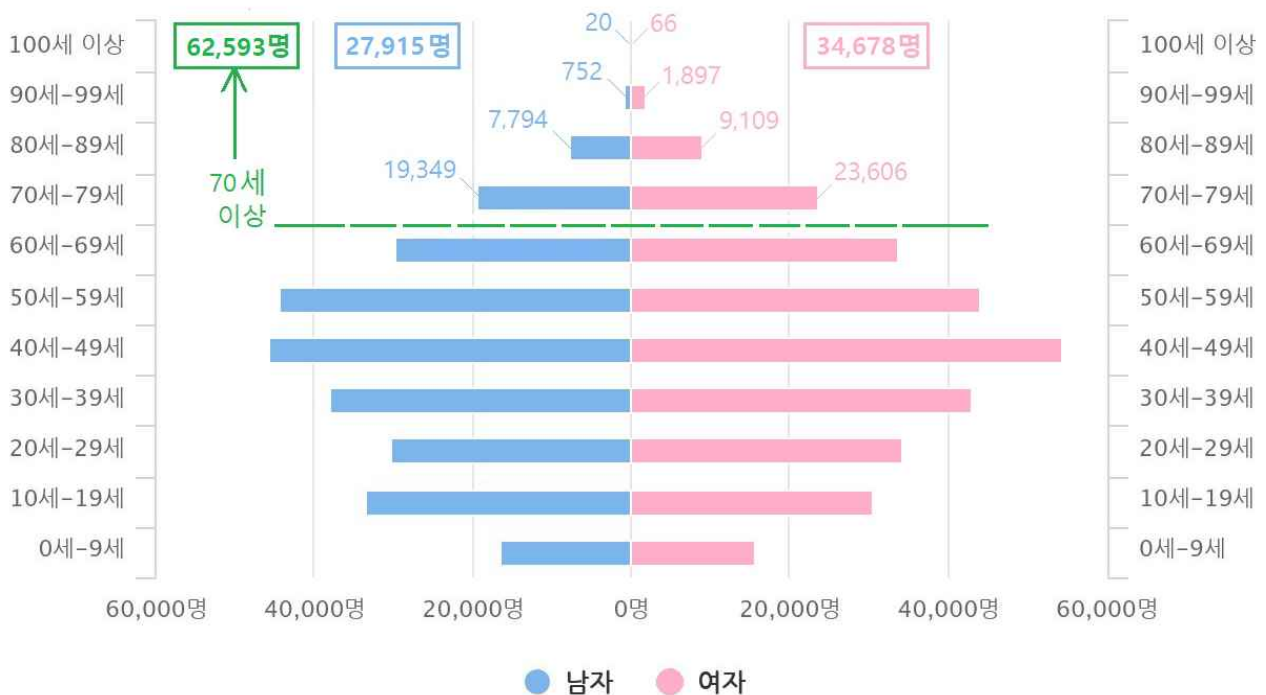
○ 고령사회정책에 따른 노인 의료 제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 연령별 및 성별에 따른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노인을 위한 의료 제도 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특히,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음.

○ 강남구 노인 인구 현황

- 2025년 7월말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통계¹⁾에 따르면 총 인구 수는 55만 6,429명이고, 그 중 70세 이상 구민은 **6만 2,593명**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년 7월말 기준)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644/1070941/view.do?mid=ID06_041001

○ 대상포진 특성

- 대상포진(Herpes zoster)은 소아기에 수두를 발생시켰던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가 1차 감염된 상태에서 무증상으로 감각 신경절에 잠복하여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어 피부분절을 따라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며 심한 통증까지 유발하기도 하는 질환임.²⁾
-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침범된 신경절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별 발병 환자 중 6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연령이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음.
- 예방접종을 받으면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워지고 증상 발생 이후 신경통 빈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됨.

○ 강남구 대상포진 환자 수 추이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대상포진 발병 환자 수는 연 평균 약 1만 4천여명으로 집계되었음. 그 중에서 ‘65세 이상 구민 중 대상포진 발병 환자 수’는 연도별 대상포진 전체 환자 수의 29%~31%를 차지했음.

강남구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포진 환자 (65세 이상)	3,792명	4,088명	4,321명	4,375명	4,409명

-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예방접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발병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됨.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안내 자료.

○ 강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개시

- 2023년 6월 이동호 의원 등 14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해당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 강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개요

- 강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에게 약독화된 바 이러스를 사용한 생백신³⁾을 1회 접종하는 것을 지원함.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권자 -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기간	연중 (백신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생백신) 1인당 1회 접종비 (2025년 예산서 기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left; padding-right: 10px;">접종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백신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행비용</td> </tr> <tr> <td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10,000원</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90,390원</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9,610원⁴⁾</td> </tr> </table>	접종비	=	백신비	+	시행비용	110,000원		90,390원		19,610원 ⁴⁾
접종비	=	백신비	+	시행비용							
110,000원		90,390원		19,610원 ⁴⁾							
접종장소	강남구 내 위탁의료기관 (2025년 기준 60개소)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 수급자 증명서 지참										

-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의료비 비급여 항목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등을 통하여 금액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싱그릭스주는 안정성을 갖춘 사백신이지만 접종횟수(2회)와 높은 가격이

3)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대하여 50%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50세 이상인 사람에게 대하여 97%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임.

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보에 공고하는 금액: 2025년 3월 기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1회당 일반백신 시행비는 변동없음.

5) 의료비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비용지원에서 제외하였고, 조스타박스주는 2차연도인 2024년 하반기 중에 한국 철수를 결정하여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임.

품명	종류	규격·단위	품목기준코드 (약품코드)	(강남구 기준) 접종비용*	
				2023년 기준	2025년 기준
조스타박스주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병	200902756 (655500901)	10만원~14만원	12만원~19만원
스카이조스터주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0.5mL/병	201707343 (056400041)	8만원~9만원	12만원~19만원
싱그릭스주	대상포진 바이러스백신 (유전자재조합)	1세트	202106382 (650003220)	18만원~25만원 (2회: 36만원~50만원)	24만원~28만원 (2회: 48만원~56만원)

*약제 포함한 1회 비용(강남구 기준)

- 질병관리과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따른 1인당 지원비용을 1차연도(2023)에는 134,610원, 2차연도(2024) 및 3차연도(2025)에는 120,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총액은 1차연도 4억 7,113만 5천원, 2차연도 및 3차연도 각각 9,600만원으로 총 누적예산액 합계는 2025년 기준 6억 6,313만 5천원임.

나. 검토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2023년 당시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된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인원 수는 2023년 7월 기준 6,938명⁶⁾으로 집계되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그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500명을 1차연도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음.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 개정 전후 비교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강남구 총 인구 수	556,429명
------------	----------

	개정 전	개정 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민)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강남구 총 인구의 1.3%	(주민등록상 강남구민) · 65세 이상 6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 70세 이상 강남구민 강남구 총 인구의 12.7%
인원 규모	2023년 기준 7,047명+ α 지원대상자 6,938명 + 매년 450명 신규 도래 연도별 집중인원 실적 (목표) 800명 (실제) 430~515명	2026년 기준 64,799명+ α 강남구민 (70세 이상) 62,593명 기초생활수급권자 (65~69세) 2,206명 + α 연도별 집중인원 실적 (목표) 1차년도 42,120명 2차년도 7,012명 3차년도 이후 3,500~3,100명
필요 예산	단가: 1인당 1회 약 12만원 연 평균 6.1억원 (2차년도 이후 약 1억원)	단가: 1인당 1회 약 11만원 연 평균 13억원 (2차년도 이후 약 4.6억원) *(추계 참조)

- 현행 조례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⁷⁾는 약 7,047명+α⁸⁾로 추산되었는데, 이를 개정할 경우⁹⁾ 개정 전 대비 지원대상자 목표인원 수는 연평균 기준 종전 대비 10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사업연도 총기간 연평균 1,177명+α → 연평균 11,780명+α)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①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α: 연령증가에 따라 연도별 신규 유입되는 인원 수 및 목표 미달/초과로 인한 변동 포함.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①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70세 이상 구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65세 이상 6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70세 이상 강남구민>인데, 부서에서 제공한 비용추계서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65세 이상 6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65세 이상 강남구민>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더욱 넓으므로 지원대상자의 범위 가늠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조하여야 함.

다. 종합 의견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율이 높은 질병인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시 증상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 권장 및 지원에 따라 접종율을 높일 경우 지원비용에 비하여 사회경제 편익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올해 발표되었음.¹⁰⁾
-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공공재정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한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음. 그 이유는 제도 설계에 있어 접종대상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검증 외에도 재정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사됨.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77.6%)는 응답과 국민건강보험료율에 대한 동결(45.2%) 또는 인하(35.1%)를 원한다는 응답이 ‘현행 재정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임.¹¹⁾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을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소액이라도 ‘코페이먼트(본인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제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 예산만으로 매년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크

10) 2025 헬시에이징 코리아, 2025. 8.,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성인 예방접종의 가치> (이한길 교수 연구진).

11)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향후 국비 지원을 받거나 자부담 조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관계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8. (생략)

※ 참고 자료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5. 7. 기준)

순번	지역명	법령명	최근시행일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3. 7. 7.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7. 9.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3. 11. 3.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5. 1. 1.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7. 17.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2. 2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7. 24.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3. 6. 28.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3. 12. 28.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4. 12.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5. 13.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023. 12. 28.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6. 25.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4. 12. 5.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7. 16.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5. 15.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4. 10.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2024. 1. 1.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5. 1. 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1. 1.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3.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2.
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2023. 10. 5.

[붙임 2]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서 (2025. 8. 기준)

(앞쪽)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방접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무료 예방접종 확대 : 대상포진 예방접종

나. 대상규모 및 비용

- 구민 중 무료 예방접종 대상 : 65세 이상 인구 전체
-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구민 1회 무료 접종
- 전제내용

- 시행 첫해인 '26년은 65세 이상 전체 대상자의 45%, '27년부터는 신규 진입자(약 6,000명) 및 기존접종자의 10%씩 증가를 전제로 함.
- '26년도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 93,590명 중 45%인 42,120명을 대상으로 함
- '27년도부터 65세 도래자 약 6,000명의 45% +기존대상자 중 미접종자의 10%를 접종하는 것으로 추계

※ 산출

- 65세 신규 진입 인원 : 매년 2,800명('25년 약 6,223명 기준) 예상
- 기존 대상자의 미접종자 10%(미접종자 전제)를 매년 접종 대상에 추가

다. 연도별 집행내역 및 접종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예산			접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대상자수	접종자수	접종률
2023	471,135	350,397	74.4	3,500 (접종대상자의 50.4%)	2,585	73.8
2024	96,000	68,996	72.9	800 (도래자 450명+미접종자350명)	515	64.3
2025 (8월기준)	96,000	8,785	9.2	800 (도래자 450명+미접종자 350명)	432	54.0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1차년도 소요예산(안): 4,633,200천원

나. 산출기초

(단위: 명,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접종인원(명)	42,120	7,012	3,500	3,150	3,120	257,147
소요예산(천원)	4,633,200	771,320	385,000	346,500	343,200	6,479,220

- 접종비 : 110,000원(백신비 90,390원 +시행비 19,610원)

- 백신비 : 90,390원(대상포진 백신 시단가 반영)

- 시행비 : 19,610원(「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예방접종비용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름)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5. 작성자 : 질병관리과 이슬비(02-3423-7268)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시비, 구비, 민간, 지방채, 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 질 의 :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다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을 추가하는 것임. 통계수치를 보면 최근 5년 간 대상포진 발병 환자의 30%가 65세 이상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70세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제안함
- 답 변 : 예산 때문에 70세 이상 지원으로 개정안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나 50세 이상이면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함. 당초 70세 이상 지원의 경우 필요 예산이 약 31억원, 65세 이상 지원의 경우 약 46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65세 이상으로 지원 확대에 동의함
- 질 의 :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강남구 내 위탁의료기관 접종과 보건소 예방접종실 접종으로 나뉘는데, 시행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만 지급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실 접종 시 시행비용 집행이 없는 것인가. 민간 위탁기관에서 접종 시 코페이먼트 차원에서 시행비용 금액 만큼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실 접종 시 자부담이 없도록 하여 보건소 접종이 늘도록 유도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한가
- 답 변 : 위탁의료기관에 지급 시에만 접종 시행비용이 집행되며 보건소 예방접종실 접종의 경우에는 시행비용 집행이 없음. 추가적인 인력 확충 없이 현재 직원만으로 보건소 접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업무 과중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예방접종 관련 자부담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7. 토론 요지

-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56호

발의일자 : 2025. 8. 29.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수정함

2. 수정내용

- 발병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70세”를 “65세”로 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 가. ~ 라. (생략)</p> <p>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u>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u></p> <p><신설> 나. (생략) ②·③ (생략)</p>	<p>제6조(지원내용)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70세 이상 구민</u> 다. (현행 나목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내용) ① ----- ----- ----- -----.</p> <p>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p> <p>2.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가. <u>65세 이상 구민</u> 나. (현행 나목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5세 이상 구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6조(지원내용)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65세 이상 구민</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	-----

발의연월일: 2025. 8. 14.

발 의 자: 이동호·김광심·이호귀·
복진경·이성수·윤석민·
이도희·이향숙·한윤수·
강을석·노애자·손민기·
박다미·김영권(이상 14인)

1. 제안이유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나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임. 강남구는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음.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5년 7월 말 기준 강남구의 70세 이상 인구는 62,593명에 달함. 이번 개정에서는 점진적인 접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구민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로써 고령층 구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70세 이상 구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지원내용)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70세 이상 구민</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현행 나목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